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: 녹지, 주차장) 결정(변경)(안) 공고·열람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도시계획시설: 녹지, 주차장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9. 6.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 주요내용

○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계	181,626	-	181,626	100.0	
농림지역	181,626	감) 181,626	-	-	
자연환경보전지역	-	증) 181,626	181,626	100.0	

•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용적률	변경사유
		기정	변경			
-	서구 금곡동 304-26번지 일원	농림지역	자연 환경 보전지역	181,626	80%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북부권 환경개선을 위하여 결정하는 완충녹지 구간 내 농림지역을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

○ 도시계획시설(녹지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A	녹지	완충 녹지	서구 오류동 402-7번지 일원	-	증) 822,806	822,806	-	
변경	1	녹지	완충 녹지	서구 왕길동 461-10번지 일원	18,700	감) 6,398	12,302	인고 제2007-224호 (2007.10.22.)	대로3-58 호선 남측
변경	2	녹지	완충 녹지	서구 왕길동 64-24번지 일원	14,747	감) 1,617	13,130	인고 제2007-224호 (2007.10.22.)	광로2-4호선 서측
폐지	3	녹지	완충 녹지	광로 3-23호선	8,226	감) 8,226	-	인고 제2007-224호 (2007.10.22.)	

•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A	녹지 (완충녹지)	·신설 - 면적 : 822,806m ²	·인천시 서구 일원의 산업단지 및 공장밀집지역 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공해로부터 인근 주거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충녹지 신설
1	녹지 (완충녹지)	·면적 변경 - 감) 6,398m ²	·완충녹지 신설에 의한 면적 변경
2	녹지 (완충녹지)	·면적 변경 - 감) 1,617m ²	·완충녹지 신설에 의한 면적 변경
3	녹지 (완충녹지)	·폐지 - 면적 : 8,226m ²	·완충녹지 신설에 의한 폐지

○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 적(m ²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폐지	주차장	서구 오류동 450-8번지 일원	1,457	감) 1,457	-	인고 제2015-16호 (2015.3.26.)	

•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주차장	·폐지 - 면적 : 1,457m ²	·완충녹지 신설에 의한 폐지

2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-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의견제출
 -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열람장소

- 인천광역시청(시설계획과, ☎032-440-1713, 남동구 정각로29)
- 인천광역시 서구청(도시계획과, ☎032-560-4673, 서구 서곶로 307)

4. 관계도서: 게재 생략(열람장소에 갖추어 둠)